

의안
번호

209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209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수정(안 제3조)

- 1) 발급 대상을 해당 연도에 13세,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서 13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3. 09. 27. ~ 2023. 10. 17.
-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동행카드 지원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.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1)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·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보건복지부 검토의견

-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,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‘재협의’
 - 보편적 현금복지를 지양하고 선별복지·약자복지를 강화하는 정부 복지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,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

□ 주요내용

- 본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만 13세(중학교 1학년)가 되는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동행카드의 지원대상을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 16세(고등학교 1학년) 청소년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 “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필요”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행카드 지원대상을 기존 13세(중학교 1학년) 청소년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임.

1)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(협의 및 조정)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동행카드 지원 및 추진경과

동행카드 지원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1 ~ 12. 15.(매년 시행)
- 사업대상 : 6,600여명
 -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에 13세,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생
- 지원금액 : 연간 10만원 포인트(상·하반기 각 5만원)
- 소요예산 : 628,890천원(2023년 기준)

추진경과

- 2016. 6. :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제출
- 2017. 2. :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종 동의
- 2017. 5.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정
- 2017. 6. : 2017년 동행카드 지원 사업 시작
- 2022.12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(지원대상확대)
- 2023. 1. :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 시행
- 2023. 3. :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 제출(성북구→보건복지부)
- 2023. 6. : 사회보장제도 변경 재협의 검토결과 회신(보건복지부→성북구)
- 2023. 6. :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(성북구→보건복지부)
- 2023. 8. : 검토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재협의 의견 유선상 회신(보건복지부→성북구)
- 2023. 9. : 사회보장제도 변경 재협의 검토결과 회신(보건복지부→성북구)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개정안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.
- 다만, 내년도 사업 시행을 앞두고 복지혜택이 축소·변경되어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바, 향후 사회보장사업 추진 시 사업예산 편성 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